

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

의안 번호	가
----------	---

발의년월일 : 1998년 11월 6 일

발 의 자 : 이 치 옥 의장

《 주 문 》

1.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감사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《 제안이유 》

- 평창군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회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음.